칼링포드 침례교회 정관

칼링포드 침례교회 정관

교회 사무 처리회의에서 __ / __ / __ 에 승인됨

(칼링포드 침례교회 정책 및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교회의 기초

   칼링포드 침례교회로 알려진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의 증거를 보이고, 1919 년 침례교 연합 설립법(사립법)(NSW)에 명시되고 1979 년 NSW 침례교 연합 총회에서 확대되어 2002 년과 2003 년에 개정된 신앙 선언을 확인하는 교인들로 구성된다.

2.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3. 교회의 통치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성령의 인도, 성경의 가르침 아래 행동할 것이다.

2. 교회는 NSW & ACT 침례교 협회의 회원이 되어 이를 지원한다.

3. 교회는 회중 정치의 원칙에 따라 통치된다.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교회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위임되거나 승인된 결정을 제외하고 교인들에게 있다.

4. 교회는 성경적 리더십 원칙을 고려하여 지도자를 임명하며, 임명된 자는 교회 회원 정책에 따라 교회의 교인이어야 한다.

5. 리더십 팀은 목사, 사역 직원, 집사, 사역 위원회(사역 리더 팀)로 구성된다.

   a) 목사는 교회의 일반적인 목회 감독을 담당한다. 담임목사는 또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 목사는 그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 교회 사무처리회의에서 임명된다.

   b) 사역 직원은 특정 사역 역할에 임명되며, 그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 교회 사무처리회의에서 임명될 수 있다.

   c) 집사는 칼링포드 침례교회의 교인으로 최소 6 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침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교회의 정책, 절차, 전략 계획의 실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목사와 직원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집사는 연례 총회에서 임명된다.

   d) 사역 위원회는 교회 사역의 감독을 담당한다. 교회 서기 또는 그 지명 대표가 모든 사역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사역 위원회 구성원은 분기별 위원회 회의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역 위원회 구성원은 연례 총회에서 임명된다.

4. 회원 자격

교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의 증거를 보이고 침수 침례를 받았거나, 침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신앙 선언을 지지할 의지가 있는 사람
2. 기도, 성경 공부, 재정 지원, 교회 예배와 사역 및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칼링포드 침례교회의 삶과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5. 교회 사무처리회의

1. 교회 사무처리회의는 매년 최소 두 번 개최되며, 그 중 하나는 연례 총회이다.
2. 추가 교회 사무처리회의는 집사와 목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소집될 수 있으며, 서면 통지가 주어진 사항만 고려한다. 또한, 교인들은 집사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회 사무처리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교회 사무처리회의 의제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
   b) 교회 사무처리회의에서 동의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3. 모든 교회 사무처리회의의 통지는 회의 전 2 주 동안 열리는 교회 예배 시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교회 서기 또는 지명된 대표는 교회 재정 정책에 따라 연례 보고서(연간 재무제표 포함)가 연례 총회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5. 교회 사무처리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활동 중인 모든 교인의 25%이다. 정족수 설정을 위해 지역을 떠나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부재 교인 명부에 있는 교인은 현재 활동 중인 교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정족수 미달로 교회 사무처리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경우, 재소집된 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활동 중인 모든 교인의 15%이다.
7. 비교인도 교회 사무처리회의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초대될 수 있으며, 목사 청빙이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고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8. 목사 청빙과 관련된 모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교회 사무처리회의에 참석한 활동 중인 현재 교인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8 세 이상의 교인만이 투표할 수 있다.

6. 교회 치리

1. 교회는 평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할 것이며, 평화에 대한 헌신이 제자가 되고 만드는 데 근본적임을 인정한다.

2. 교회는 교회 생활에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교회의 교인들은 용서, 평화,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교회의 갈등 해결 정책과 절차를 따르기로 동의한다.

7. 재산 소유권 및 해산

1. 모든 교회 재산의 수탁자는 NSW 침례교회 재산 신탁이다.

2. 집사들은 교회 자산(건물 및 내용물), 근로자 보상(직원 및 자원봉사자), 공공 책임, 전문인 배상 및 기타 필요한 보험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은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3. 교회의 자산과 수입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 교회가 해산되는 경우, 해산 후 남은 잔액과 모든 부채 및 책임을 충족한 후 남은 금액은:
   a) 1984 년 NSW 침례교회 재산 신탁법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된 재산의 경우, 해당 법(제 29 조)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 기타 모든 경우에는 NSW & ACT 침례교회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조직으로 이전되며, 이 조직은 자산과 수입을 교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8. 헌법 개정

1. 이 헌법의 개정은 그 목적으로 소집된 교회 사무처리회의에서 투표 자격이 있는 출석 교인의 75%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다.

2. 이러한 회의의 정족수는 활동 중인 현재 교인의 50%이며, 지역을 떠나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부재 교인 명부에 있는 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 개정 제안은 교회 서기 또는 그 지명 대표에게 서면으로 동의안 통지로 제출되어야 하며, 서기는 제안된 변경 사항의 세부 내용이 헌법 개정이 제시될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1 개월 전에 모든 교인들에게 배포되도록 해야 한다.

4. 교회 서기 또는 지명된 대표는 집사들과 협의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이 NSW & ACT 침례교 협회의 현재 가입 요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